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00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 안규백·고용진·김민기

김승원 · 양정숙 · 위성곤

이성만 • 이용빈 • 이정문

이형석 · 전혜숙 · 주철현

의원(12인)

제안이유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으나,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과거부터 존재해 온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반 인권적인 병영 부조리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는 2015년 12월 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군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 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에 막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다루는 감시·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 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 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 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을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군 및 사회 전반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적용되는 군인과

준용되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의 사람에 대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 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8 조).
- 바.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안 제10조).
- 사. 군인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하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14조).

- 아.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요건에 따라 각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군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국방부장관등)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17조).
- 차.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가짐(안 제18조 및 제19조).
- 카.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기각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함(안 제21조).
- 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등에게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와 각종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 파.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

- 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6조).
- 하.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하되, 국회군인 권보호관은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 거.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너.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889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 9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을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군 및 사회 전반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군인"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군인을 말한다.
- 2. "군인의 기본권"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장에 따라 보장되는 군인의 기본권을 말한다.
- 3. "군인의 기본권 침해"란 군인의 기본권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범위를 넘어서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기본권침해와 군인의 기본권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군인의 기본권 침해 (이하 "군인기본권침해"라 한다)에 대한 진정과 조사 등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이하 "군인기본권보호"라 한다)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임면 등

- 제6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둔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국회군인권보호관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 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 및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 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 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군인이 군인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군인의 기본권침해 및 군인의 기본권상 황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4. 군인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총괄, 종합 및 조정
 - 5. 군인의 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이행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6. 군인의 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의견 제 시 및 자문
 - 7. 군인의 기본권상황에 관한 정기 불시 실태조사
 - 8. 군인의 기본권보호 및 군인의 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9.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 인권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 10. 그 밖에 군인의 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 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 제8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면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제9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 3. 국회군인권보호관 임명일 전 3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신분보장)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회운 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국회의장이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

- 제11조(공무원의 임용) 국회군인권보호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처)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군 인권보호관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 ⑤ 사무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임면한다.
 -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보고서 작성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매년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군인기본권침해 방지와 군인기본권보호 관련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의

장과 국회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는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 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4장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조사와 구제

- 제14조(조사 대상) 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②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내용을 진정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피해자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④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기 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조사 1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의 기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사 또는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전 통보 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의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진정의 각하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 1. 진정의 내용이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 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군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군형법」제4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 내용이 구체 적이고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7. 진정이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9.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 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

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제16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 백한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 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제15조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 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

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사기관과 국회군인권보호관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의 조사를 위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작성한 모든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군인기본 권침해 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이 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자료나 물건의 제 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

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부대·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조사 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 1. 「보안업무규정」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국가비밀 사항인 경우
-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 우
- 제19조(질문·검사권)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질문·검사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0조(동종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사건 중 동종 사건으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에 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동종 사건에 국회군인권보호관 및 소속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의 입회를 요구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1조(진정의 기각)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

- 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그 소속 부대·기관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동일하거나 유사한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
 - 4. 법령 · 제도 · 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국회군 인권보호관이 권고한 내용과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3조(고발 및 징계 권고)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이나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장관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 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

관등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 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22조 또는 제 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5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한 국회 군인권보호관이 검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나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제26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군인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1. 의료 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 2. 부대·기관이나 장소 또는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감 정 또는 다른 부대·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 3.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등의 군 내 구금·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 4.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 5.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그 직무에 서 배제하는 조치
-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정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 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국방부장관등에게 그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27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계속 중인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

- 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있다.
- 제28조(조사의 공개)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29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 제30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회군인권보호관, 그 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이나 제33조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파견 된 직원 또는 파견되었던 사람 등 이 법에 따라 군인기본권침해 방 지 및 군인기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자는 국회군 인권보호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국회군인권보호관 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진정·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

- 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 제36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 1.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2.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3. 위계(僞計)로써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업무 수 행을 방해한 사람
 - 4. 제14조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군인기본권침해 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

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자격 사칭) 제30조를 위반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 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 제40조(긴급구제 조치 및 조사 등 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 니한 사람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따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 4.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
-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